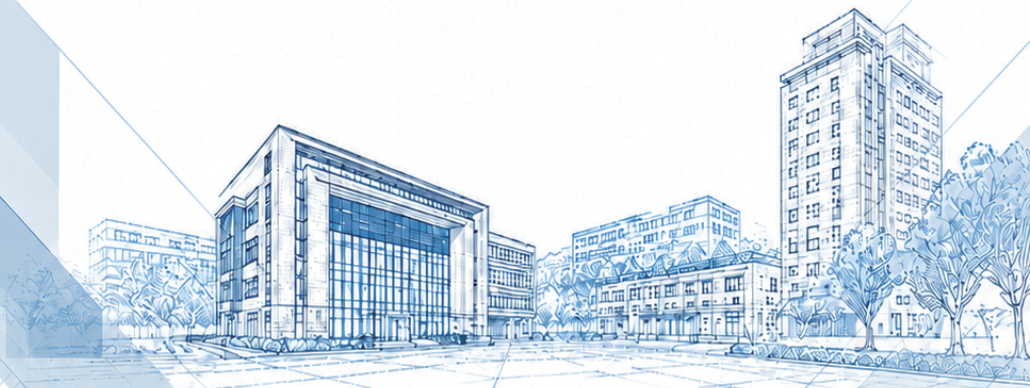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2025 연구비 감사 사례집



부산대학교 연구윤리센터

CONTENTS

목 차



프롤로그 사례집 안내 1



1부 연구비 감사 주요 지적 사례

- 2025년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 감사 지적 사례 3
- 타 기관 감사 등 지적 사례 9



2부 연구비 관리 및 운영 안내

- 연구비 개요 18
- 연구비 규정 안내 23



3부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제재처분

-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28
- 연구비 제재처분 개요 및 절차 33



부 록

- 관련규정 다운로드 안내
-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제보 안내

PROLOGUE

프롤로그

사례집 안내

연구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연구자 및 행정 담당자 여러분이 연구비와 산학협력 사업비를 보다 책임 있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25 연구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비 및 산학협력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대·내외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례를 포함하여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사례집이 연구자 여러분의 연구비 관리 역량 강화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연구윤리 강화와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구자 여러분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 부처(기관), 사업 유형 및 수행 기간에 따라 일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연구비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사례집은 부산대학교 연구윤리센터 홈페이지(<http://cre.pusan.ac.kr>)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1부 -

연구비 감사 주요 지적사례

1 2025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 감사 지적 사례

① 출장여비(숙박비, 일비) 집행 부적정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 동일 지역 체재 기간이 도착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일비 감액 없이 출장여비를 전액 지급함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숙박비는 실제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되 항공여행 중에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미국 출장여비를 집행하면서 기내에서 숙박한 일수(1박)에 대해서도 숙박비를 제외하지 않고 지급함

관련 법령(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 명령 사후 승인

-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출장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의 출장 승인(명령)을 받아야 함
- 소속 기관장의 출장 명령 없이 출장을 실시한 후 출장 신청서를 사후 상신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함

■ 관련 법령(규정)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별표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출장비] 계상(집행)기준: 2) 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출장 승인 필요, 다만, 학생 연구자는 ERP 시스템의 출장신청서 및 여비정산서를 이용

③ 대금 지연 지급

-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명기된 청구일로부터 5일(토요일이나 공휴일 제외) 이내에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 연구용 차량임차료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상 청구일(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에서 최대 47일까지 초과하여 지연 청구함

■ 관련 법령(규정)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제14조 (연구비 지급 청구)

- ⑤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명기된 청구일로부터 5일(토요일이나 공휴일 제외) 이내에, 연구비카드는 대금 결제일 10일 전까지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연구재료비 분할 구매

-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제16조 제1항 및 「부산대학교 연구물품 등의 중앙 구매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르면 건적 금액이 300만원 (VAT 포함) 이상인 시약 및 연구재료는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고 중앙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동일한 업체로부터 유사한 시기에 건당 3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분할 구매하여 직접 집행함

■ 관련 법령(규정)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제16조 (연구용 물품 등 구입)

- ① 연구비에서 집행하는 물품, 도서, 공사, 용역 및 임차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서 중앙구매하거나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원격지 현지구매 등 부득이한 경우와 일정 금액 이하로 구매하는 물품 등은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 연구물품 등의 중앙 구매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앙구매 기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중앙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시설 장비, 기자재: 단가 100만원(VAT포함) 이상
 2. 제1호를 제외한 연구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 건적금액 300만원 (VAT포함) 이상

⑤ 일상감사 미이행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지침」 제4조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연구비 등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며, 제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1인당 5백만원 이상 연구수당을 지급할 경우 일상감사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

- 1인당 5백만원 이상의 연구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상감사를 득하지 않음

■ 관련 법령(규정)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지침」 제4조 (감사의 구분)

일상감사는 연구비 등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지침」 제6조 (감사의 대상)

- ③ 수시점검은 직접비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중앙구매부서를 통하여 구매하여 검수를 득한 후 지출한 금액은 수시점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1인당 5백만원 이상인 연구수당

⑥ 집행서류 구비 미비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사전에 이루어진 후 하여야 함
 - **복합기 등을 임차하면서 사전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함**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르면 내부거래 지출 시 수행기관장의 내부결재를 득하여 내부품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특허 보정 및 출원 비용을 내부거래로 지출하면서 내부품의서를 구비하지 않고 집행함**

■ 관련 법령(규정)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I. 기본지침 및 Ⅲ. 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등) 예산과목 명세서

- I. 기본지침-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예산집행은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집행”
- Ⅲ. 예산과목 명세서 [내부거래지출] 구비서류: 내부품의서

-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별표 4] 외부인건비 증빙자료 내역 중 외부인건비 청구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타교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외부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시 관련 구비 서류를 누락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집행함

■ 관련 법령(규정)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별표4] 연구비 청구시 비목별 증빙자료

[외부인건비] 구비서류: 외부 참여연구자 기관장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교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⑦ 자산 관리 부적정

-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 등을 학교자산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
-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할 책상을 구매하면서 물품 등록을 누락함
-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및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르면 책상, 컴퓨터 등 사무용 비품 등은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야 함
- 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비품(대형선풍기)을 소모품비로 집행함

■ 관련 법령(규정)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제4조 (관리기관 및 집행기관, 수행기관)

- ④ 관리기관 및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 4. 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한 각종 기자재, 물품 및 도서 등을 학교자산에 귀속하여 관리

⑧ 회의록 작성 내용 부적정

-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회의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동일 시간 개최 회의에 동일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회의록을 제출함

■ 관련 법령(규정)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별표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회의비] 계상(집행)기준: 4)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 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제출(다만, 주말 및 휴일 집행 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명시)

⑨ 예산집행과목 부적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참여 연구자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연구교수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연구활동지원금)에서 집행함

■ 관련 법령(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 (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 (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 타 기관 감사 등 지적 사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대상 부적정 집행사례 ※ 2024년 기준

①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에 따라 기관의 공용 공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간접비로 집행하여야 함
- 기관의 공용(또는 타 사업비로 공간을 마련한) 사용공간의 전기공사 비용을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함

■ 관련 법령(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재료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에 따라 연구단 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 연구단은 행사 전시 모형 제작 및 방문자를 위한 체험키트 제작 비용을 연구재료비(직접비)로 집행함

■ 관련 법령(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③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에 따라 동일비용 2회 이상 중복 집행은 불가함
- 참여연구자의 출장비를 중복하여 계상함

■ 관련 법령(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비용은 간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집행함(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구분하여 사용이 필요함)

■ 관련 법령(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에 따라 회의비는 외부 참석자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내부 참석자만(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회의 참석 및 회의비를 집행함

■ 관련 법령(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에 따라 실제 집행 내역에 대한 증명자료 입증이 필요함

- 결의 제목과 실제 구매항목이 불일치함

■ 관련 법령(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④ 보안수당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2에 따라 보안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함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한 인건비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안수당을 지급함

■ 관련 법령(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2 (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⑤ 연구수당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조에 따라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집행함

■ 관련 법령(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조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⑥ 연구수당(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 계상이 불가함

■ 관련 법령(규정)

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연구수당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대상 주요 지적사례 ※ 2023년 기준

①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

- 사업 목적과 무관한 기념품 집행
- 사업 목적과 무관한 역사탐방 이벤트 관련 기념품을 사업비로 집행

■ 관련 법령(규정)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주요 집행제한 항목]

BK21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경상비 성격의 경비 등

-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체험활동, 관광성 비용 등 집행
- 국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 사업 목적과 무관한 테마파크의 입장료를 사업비로 집행

■ 관련 법령(규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관리 매뉴얼

[주요 집행제한 항목]

사업과 무관한 외유성·단발성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 기타 사업과 무관한 경비 집행
- 참여인력이 아닌 구성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

■ 관련 법령(규정)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주요 집행제한 항목]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참여인력이 아닌 구성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② 대학 자체 지급기준 미준수

- 전문가활용비(강사료) 지급기준 미준수
-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학 자체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비 집행

■ 관련 법령(규정)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기준

관련 법률 및 제도 기준

- 사업비 집행절차 및 세부 집행방법은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립한 대학 자체 지침에 따름

- 회의비(식비) 지급기준 초과 집행
-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대학에서 정한 1인당 식비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

■ 관련 법령(규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준수사항 - 기본원칙

- 사업비 집행절차 및 세부 집행방법은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립한 대학 자체 지침에 따름

③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

- 대학 축제 및 행사 개최에 따른 섭외비용 지출
- 학교 축제 및 행사 개최 등에 따른 출연진 섭외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

■ 관련 법령(규정)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기준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사용 관련 사례]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적정한 집행 증빙

- 기타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
- 통상적인 업무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소프트웨어(한글, MS오피스 등)를 사업비로 구입

■ 관련 법령(규정)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주요 집행제한 항목]

대학의 통상적인 업무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소프트웨어(한글, MS오피스 등)에 대한 집행 ※ 단,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되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사무실 구축·운영 시 구입 가능

④ 기타 부적정 경비 집행

- 사업기간 외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콘텐츠 구독료를 집행

■ 관련 법령(규정)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기준

(사업비 관리)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
(회계연도)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함

- 회의비 부적정 집행
- 관련 회의일자와 지출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회의비용을 사업비로 집행

■ 관련 법령(규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관리 매뉴얼

사업비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출결의서를 통해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함

- 기타 부적정 사업비 집행

- 사업 규정 상 인건비 집행이 불가한 제한항목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

■ 관련 법령(규정)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기존 교·직원 및 컨소시엄 참여 기관 직원에 대한 급여, 단순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정규수업(특화분야 연계 학과)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인센티브
- 참여인력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 원소속기관 성과급과 중복지급 불가
- HiVE 센터장 외 보직수당, 통상적 업무 수행에 따른 사업운영 수당
- 지역사회공헌 자율과제 중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 성과급과 중복지급 불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국고 미반납

■ 관련 법령(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해 기념품을 구입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참여 대가성 기념품 제공

■ 관련 법령(규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IV. 사업비 부적정 집행사례

- 프로그램 참여 및 독려 등을 위한 현금(쿠폰, 기프티콘 포함), 물품 등

- 2부 -
연구비
관리 및 운영안내

1 연구비 개요

연구비 유형별 구분 기준

구분항목	국가연구개발사업(R&D)	용역사업(일반용역)
사업 목적	과학기술 진흥, 신기술 개발 등의 공익적 목적	특정 과업의 결과물 도출 등 발주자의 목적 달성
결과물 소유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전문기관에 귀속	계약 조건에 따름
회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위법령) - 각 부처별 규정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 지원기관 내부 지침
전문기관 (예시)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



연구활동 기간 내 사용 원칙

단,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지원원인행위한 금액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가능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등) 사용 원칙

불가피할 경우 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 사용 가능(사유서 증명자료 첨부)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구비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는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검수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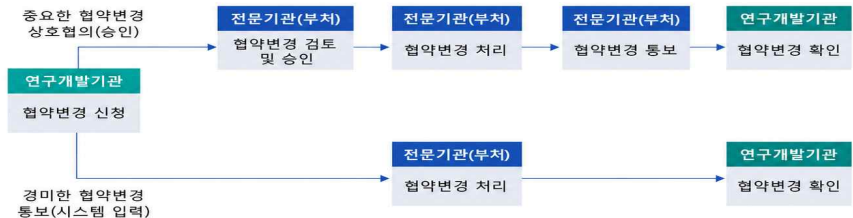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1호)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국무조정실 등)이 포함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
- 실무적으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사업(R&D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¹⁾

협약 체결 절차²⁾



협약 변경 절차³⁾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5.04.) p.19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5.04.) p.63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5.04.) p.73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관련

구분	계상불가	
일반	◦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환차익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주류 등 유흥성비용	
중복 계상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비용 ◦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한비용 ◦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한비용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 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해당 참여연구자의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제외)	
공간 임차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내부 거래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총괄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예외 (계상 가능)	◦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계정대체) 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계정대체)한 비용 중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 대체 하는 비용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요약본

구분	항목	사용용도
직접비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 대학원생 및 학부생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 인건비 계좌로 직접 지급 원칙 - 학적 상태(휴학생, 졸업생 등) 확인 필요
	연구시설·장비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 구입, 설치, 임차,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연구 재료비	- 실험, 연구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시약, 부품, 재료 등)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위탁연구 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국제공동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연구 활동비	- 회의비(회의 목적·참석자 명시), 출장비(공식 출장만 인정), 외부전문가 활용비,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보를 위한 비용 - 단, 접대비, 사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음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구분	항목	사용용도
간접비	인력 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지원 경비 -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연구소(센터) 운영 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학술용 도서·전자 정보 구입비, 학술대회 지원비 등
	성과활용 지원비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 관련된 활동 비용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실무해석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있는지?

- ✓ **(일반물품 및 재료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세부 구매 내역을 요구하지 않고 **항목별 총액만 계획(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반 물품, 시약, 재료 등은 계획서 상에 개별 품목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용도와 기준에 부합한다면 자율적으로 구매가 가능함**

-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예외 원칙)** 다만,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는 국가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통제됨

[주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신규 구입·임차하거나, 계획된 장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 전문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야 함(사전 승인 없이 임의 집행 시 전액 불인정 및 회수 대상)

2 연구비 규정 안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핵심 내용

-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학술진흥법」 등의 법률에서는 부처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음
- ⇒ 해당 법률의 조항이 혁신법과 상충되는 경우(예시: 협약방식, 제재 처분, 업무 위탁)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실무해석

혁신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 ✓ 해당 내용과 취지가 **혁신법과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혁신법과 부합하는 내용이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여도 무방함. 그러나 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혁신법의 내용 또는 취지와 배치되는 경우 혁신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적용 받지 않는 사업

혁신법 제3조 각 호의 사업은 혁신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재처분 등 다른 조항은 혁신법을 적용함

*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선정, 협약,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제13조),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활용(제16조, 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8조)

①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제1호)

-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립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예산상 연구용역비(260-01목)로 수행하는 사업이 해당함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의 법률과 기관 내규 적용)

② 협정·조약에 따른 부담금 사업(제2호)

- ODA, 국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국제기구 등에 국제부담금 (340-02목) 형태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사업
(해당 협정·조약 및 국제기구 등의 규정 적용)

③ 국방 분야 보안과제 사업(제3호)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방사업 중 혁신법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사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적용)

④ 정책 개발 및 주요 정책현안 조사·연구 사업(제4호)

- 정책연구비(260-02목)로 편성되는 부처별 정책연구사업,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한국국방연구원의 기본사업
- 부처 정책연구사업: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안부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적용
- 출연연 및 한국국방연구원 기본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기관 내규 적용

⑤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위탁 사업(제5호)

- R&D 기획·평가·관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목)로 편성되어 전문기관 등에 지급되는 비용 지원 사업

⑥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 사업(제6호)

- 「학술진흥법」에 따른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⑦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

- 교육부 소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
(실무적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적용)

■ 실무해석

1. R&D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R&D 성격인 사업의 혁신법 적용 여부

- ✓ (원칙) R&D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법의 적용 대상은 아님**
(유의사항) 사업 운영 편의를 위해 혁신법의 절차나 서식을 준용(참고)할 수는 있으나 이는 내부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나 법정 의무를 피감기관·연구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2. R&D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비R&D 성격인 사업의 혁신법 적용 여부

- ✓ (원칙) R&D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R&D 성격인 사업이므로 **혁신법의 적용 대상임**
(내역사업별 분리 원칙) 다만,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서 **R&D 내역사업과 비R&D 내역사업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R&D 성격의 내역사업에만 혁신법을 한정하여 적용함**
※ 내역사업 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R&D와 비R&D 영역이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면, 사업 전체에 대해 혁신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연구비 규정 안내

- 부처별 훈령·규정 ※ 상위 근거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반하지 않아야 함

정부부처	세부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상위 근거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경찰청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기상청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산림청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상위 근거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3부 -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제재처분

1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사항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 완료된 직접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연구개발비 사용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미비한 금액 -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금액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의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 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구분		부당집행 기준
인 건 비	공통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연구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 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 인력을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초과 차액
	내부 인건비	◦ 총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계상(비영리기관) ◦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지급한 금액 ◦ 직접비, 간접비로 중복/분할/교차하여 지급한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외부 인건비	◦ 원 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 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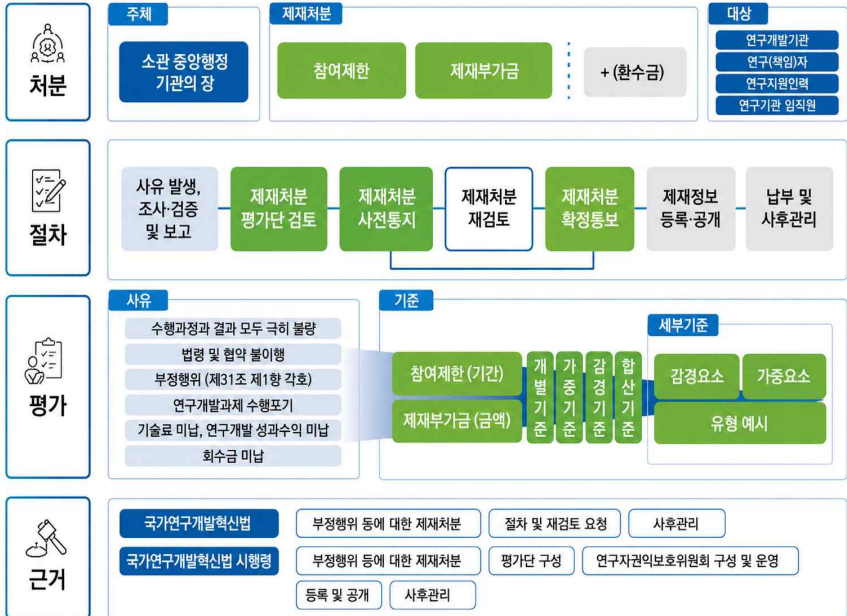
구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수당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1인에게 지급된 금액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총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금액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연구시설·장비비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장비 등록증'을 첨부 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3,0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 연구시설·장비 도입 관련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 간접비성 경비인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구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 활동 비용	출장비	◦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및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회의비	◦ 주류 등 유흥성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외부 참석자 없이 개최한 회의 등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한 회의비 집행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외부 전문가 활용비	◦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집행된 금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자문료, 강사료 등)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 ◦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 * 참여연구원 지급 불가, 내부는 연구실단위로 지급 가능 ◦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단, 시험·분석·검사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 (비영리기관)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구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 활동 동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 최종(단계)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지 않은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 초과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최소단위를 입증 시 계상가능 ◦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연구인력 지원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 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등) ◦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주류 등 유흥성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그 밖의 비용	◦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 기관운영 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논문 지도비등
연구 재료비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 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작품의 제조비용 *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2 연구비 제재처분 개요 및 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법적근거

-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63조에 기반
-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제재처분 사유와 대상자, 유형과 시효 등을 규정하고 제재처분의 절차, 재검토 요청, 사후관리 등의 근거를 제공함
- ③ 동법 시행령을 통해 제재처분 기준이나 평가단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5.04.)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용어

용어	정의
제재처분 주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32조제1항) 제재처분 권한 자체는 외부 위임이 불가함. 다만, 혁신법에 따라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제재처분 대상자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법 제32조제1항) ◦ 입증책임: 제재처분 사유(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음 ◦ 자료요청: 사유 입증을 위해 대상자나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소명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법 제2조제1호) ◦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 평가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 하는 과제를 의미(법 제2조제2호)
참여제한	◦ 제재처분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 처분(법 제32조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국가연구개발활동(법 제2조제8호 각호)의 참여가 제한됨 -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제출, 사전 기획 참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신청,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참여 및 각 부처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등에도 참여 활동 제한됨

용어	정의
제재 부가금	◦ 제재처분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법 제32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34조제2항)
연구 개발비 회수금	◦ 연구개발비 환수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실시되는 정산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 (법 제13조제7항, 시행령 제26조 제5항 각호)
연구 개발비 환수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연구개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에 대한 환수(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59조제3항) ※ 적발 후 제재처분 전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금액 전액을 반납한 경우 환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일부를 반납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환수금으로 책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환수액은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 즉, 용도외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은 부정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 해당행위가 발생할 당시 제재대상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조사검증의 주체가 되어 해당 결과를 보고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자에게 부과 ◦ 연구개발비 환수는 현금 환수를 원칙으로 함

용어	정의		
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각호		
	<table><tr><td>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td><td>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자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td></tr></table>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자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자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table><tr><td>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td><td>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사용기준은 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20조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td></tr></table>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사용기준은 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20조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사용기준은 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20조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table><tr><td>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td><td>연구개발성과 소유 관련규정 위반</td></tr></table>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연구개발성과 소유 관련규정 위반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연구개발성과 소유 관련규정 위반		
<table><tr><td>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td><td>보안대책 위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보안사항의 국내의 유출</td></tr></table>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보안대책 위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보안사항의 국내의 유출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보안대책 위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보안사항의 국내의 유출		

용어	정의				
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각호				
	<table border="1"> <tr> <td>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td><td>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td></tr> <tr> <td rowspan="2">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td><td>포괄규정</td></tr> <tr> <td>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td></tr> </table>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포괄규정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포괄규정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 실무해석

부정행위 등으로 연구개발기관(A기관의 부설연구원)이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A기관과 그 외 부설기관들도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지?

- ✓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기준으로 제재처분을 부과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는 바, 해당 부설 연구원이 A기관과 독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였고 과제 수행당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A기관 또는 다른 부설기관들에 대하여는 제재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변경된 제재처분 주요내용

① 제재처분 적용범위

-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됨(다만, 법 제3조 각호 또는 제4조 단서에 따라 적용 예외를 인정받는 특정 사업의 경우, 해당 조항과 관련된 제재처분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실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사업(R&D)'으로 분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요R&D) 또는 기획재정부(일반R&D) 심의를 받는 세부사업을 의미함
- 예산 중 일부를 연구개발 예산으로 분류하는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 또는 세부 내용에서 연구개발 내용이 구분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
- * 대학혁신지원(교육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과기정통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기본경비(농식품부), 질병관리청 기본경비(질병청)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비에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혁신법적용 여부는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

②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

-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5항
- 제재처분은 해당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해당 제재처분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 **(제척기간의 기산점)** ①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과 ②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 중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것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래하면 제척기간은 만료됨
-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제재처분의 확정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재처분 절차 진행 중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재처분은 불가함

③ 제재처분 사유의 변경 등

○ (제재처분 사유의 변경)

- 종전의 '연구결과 불량'은 혁신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모두의 극히 불량을 포함하는 사유로 변경됨
- 종전의 '연구비용도 위반'은 혁신법에서 연구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모두의 위반을 포함하는 사유로 변경됨

○ (제재처분 사유의 추가)

- 혁신법에서는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별도 명시
- 혁신법에서는 조사방해행위, 연구비 허위증빙·거짓보고 등 제재처분 사유 신설

○ (제재처분 사유의 제외)

- 혁신법에서 연구개발비 환수금미납은 제재처분 사유에서 제외됨
- ※ 혁신법에서는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가로 인한 수익의 미납,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미납의 경우는 참여제한 처분이 부과되고, 연구개발비 환수금미납, 제재부가금 미납의 경우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

④ 제재처분 종류 및 참여제한 기간·범위조정

○ 제재처분이란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의미함

-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대상자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 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법 제32조제1항)
- 참여제한 기간이 과제별로 10년(과학기술기본법 상 5년 이내)이내의 범위로 상향되었으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으로 활동 등 국가연구개발활동(법 제2조제8호 각목) 전반에 대해 참여가 제한됨

- 연구개발비 환수는 제재처분과 유사하지만 제재처분과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
- 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종류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치의 효과 등을 고려 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서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
- 따라서, '환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도 제재처분과 마찬가지로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보의 절차를 동일하게 따라야하며, 통합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도 등록·관리하여야 함

⑤ 제재처분의 검토를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3의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

⑥ 제재처분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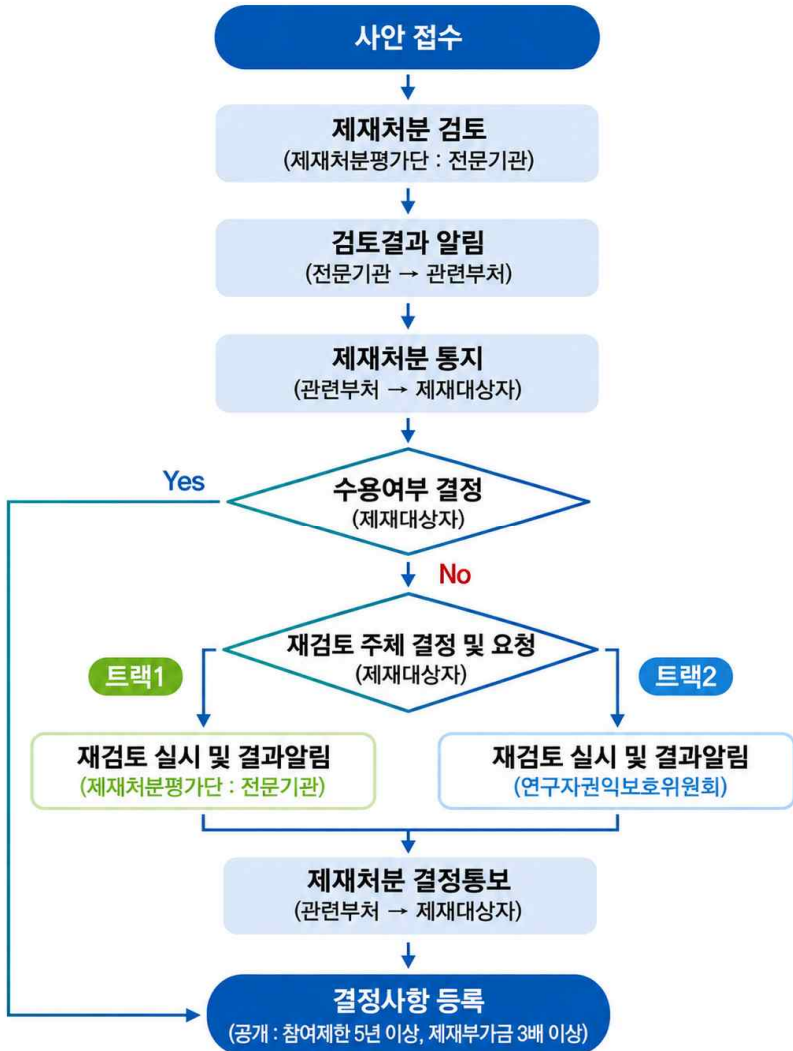
-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 통보한 내용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이 중 제재대상자가 받은 단일 제재처분에서 5년 이상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으로 처분된 경우는 이를 공개하여야함(법 제33조 제7항, 시행령 제 62조)
- ※ 제재처분의 공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점부터 6개월간 공개

■ 실무해석

4. 제재처분의 종류 및 참여제한 기간·범위조정관련 혁신법 제34조에서 “(연구지원원은 제외한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 ✓ 혁신법 제34조의 '연구지원 제외'는 참여제한자가 소속 기관에서 특정 과제에 귀속되지 않고 수행하는 일반적인 연구행정지원 업무(서류 접수, 시설·장비 총괄 관리 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함
- ✓ 참여제한 기간 중인 자를 특정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지원인력으로 등록하여 **해당 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정산 시 불인정 및 회수)**하며, 기관 간접비 또는 기관 자체 재원 기반의 일반 행정지원 업무만 가능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제재처분 절차⁵⁾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5.04.)

제재처분 사유 발생에 따른 조사·검증 및 보고

① 부정행위의 경우(법 제31조제1항 각호 규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조사·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조사·검증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를 조사·검증할 수 있음

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1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적을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호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적을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호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호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그 외의 경우(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6호)

- 법 제3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 이외의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조사·검증 없더라도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제재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음

부정행위(법 제31조제1항) 외의 제재처분 사유(법 제32조제1항)	
1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4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재처분 사전통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함(법 제33조제2항 각호)

*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제재대상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해당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함

④ 제재처분의 재검토

-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 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법제33조제3항)

⑤ 확정통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로부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함(법 제33조제5항~6항)
-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행정문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하여야 함

⑥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및 사후관리

- 연구개발비 환수금 납부 또는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 하여야 함(시행령 제63조 제1항)

- 부 록 -



규정 및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관련규정 및 지침 등

규정명	관리부서	다운로드
부산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운영 규정	연구윤리센터	
부산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및 연구비 등의 감사에 관한 규정	연구윤리센터	
부산대학교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 감사지침	연구윤리센터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연구물품 등의 중앙 구매에 관한 기준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연구비카드 관리지침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산학협력단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안내



제보내용



교내에서 발생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의 부당한 사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조사 결과, 유용한 연구비를 회수하고
관련자에게는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보방법 및 수단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별지서식] 따라 제보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할 경우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051-510-1376



gamsa@pusan.ac.kr



부산대학교 삼성산학협동관 509호 연구윤리센터



※ **제보서식 다운로드**: 부산대학교 연구윤리센터 홈페이지 >
연구관련부정행위신고센터 > 연구관련 부정행위 제보서 다운로드



부산대학교 2025 연구비감사사례집



발행부서 부산대학교 연구윤리센터



발행일자 2026년 5월



전 화 051-510-7981, 1376